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결제원 <small>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& Clearings Institute</small>
	보도	12.20.(금) 조간부터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유 영 준(02-2100-2950)	담 당 자	이수암 사무관(2676)	
	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정 대 성(02-531-1700)		정윤성 팀장(1710)	

제 목 :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

-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라 고객 본인에게 통보할 때,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◆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은성수)와 은행권*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

*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

- 12.27.[금]부터 은행은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,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

◆ 우선 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,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

1. 추진 배경

□ 현재 은행은 「금융실명법」*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(예금주)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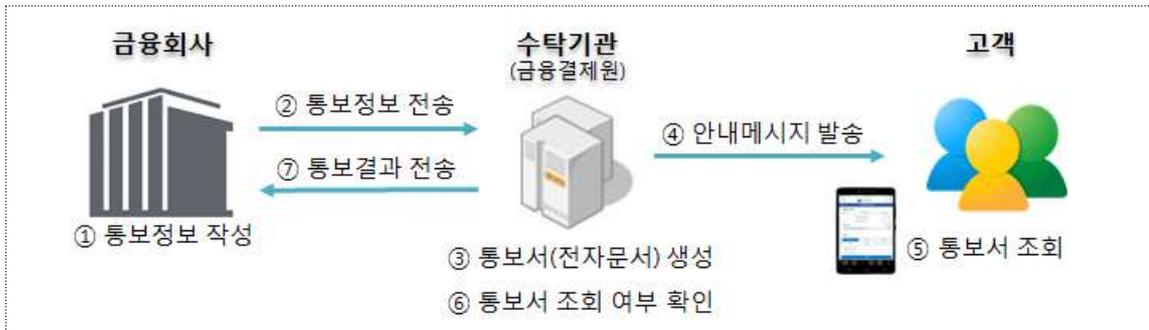
*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그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(법 제4조의2)

-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,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2. 추진 내용

- ① (확인방법)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·열람 절차



- (이용채널)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 (m.postinfo.or.kr), 모바일 앱(어카운트인포)에서 직접 확인합니다.
- (본인확인)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, 별도의 확인 절차를* 마련 고객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*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

- ② (이용대상)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,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.
-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*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

* SNS 알림은 2일 이후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후

- ③ (행정기관) 은행권*은 '19.12.27.부터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, 향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* 광주, 경남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수협, 신한, 씨티, 우리, 전북, 카카오은행, 케이뱅크, 제주, KEB하나, SC제일 등 17개 은행

- 우선 인사혁신처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, 향후 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.

3. 기대 효과

-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,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 -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,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.
 -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, 인력 및 자원을 자금중개 등 금융고유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.
 - 부수적으로,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의 예산과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*합니다.
- * (예) '18년 통보 건수(인사혁신처 약 63천건, 예보 약 22천건)를 기준으로, 전자문서로 통보시 연간 약 1.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(금융결제원)

4.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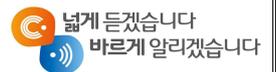
- 우선 '19.12.27.부터 인사혁신처·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, 향후 참가기관이 늘어날 예정입니다.
- '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,
- 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 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.
(금융결제원·금융보안원)

< 별첨 >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1부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①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

[Web발신]

<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>

안녕하십니까? 000 고객님

금융회사(은행 17개사)로부터 '금융실명법' 제4조의2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결제원(1577-5500)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귀하가 거래하고 계신 금융회사가 행정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.(2019.12.17. 08:00 기준)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가 2019.12.19. 11:30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등록된 귀하의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

○ 세부내역 : m.postinfo.or.kr

② 휴대전화 본인인증

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비스

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열람

정보요구기관에 제공된
금융거래정보 내역 확인하기

휴대전화 본인 확인

서비스 안내

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목록 조회

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비스

홍길동님의 금융정보 제공내역은 통보서 생성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조회 가능합니다.

통보서 열람일: 2019-11-29

제공일	제공기관	정보요구기관	조회하기
2019-11-28	ㅇㅇ은행	ㅇㅇ공사	

④ 통보서 조회

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

홍길동 고객님 귀하

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저희 은행에서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아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으로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통 법 제4조의2에 의거 통보하오니,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건 관련한 문의는 아래 정보 요구기관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정보 요구기관 : ㅇㅇ공사

□ 요구문서번호 : 2019-16063-2

□ 정보 제공근거 :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□ 정보 제공일자 : 2019. 11. 28 (목)

□ 정보 사용목적 : 재산조회

□ 정보 제공내용 : 계좌정보

□ 문의처 : ㅇㅇ공사 김철수 (TEL : 043-0000-0000)

□ 통보 유예 안내 : 금융실명법 등에 의거 정보 요구기관의 통보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1월 29일

ㅇㅇ은행 업무지원센터 직인생략